

#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(경대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40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7. 13.

발의자 : 경대수 · 이명수 · 김성찬  
김중로 · 박덕흠 · 이종명  
성일종 · 김기선 · 김현아  
엄용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,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하여는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합·연계하여 이 법에 따른 농어촌 보건복지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이에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

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##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협조”를 “협조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기본계획, 추진계획 및 실천계획은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)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em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9조(계획수립의 협조 등) ①         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         ② 기본계획, 추진계획 및 실천          계획은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따          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「사회          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          권리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5          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        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         평가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          다.</p>